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67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10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박다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 범위(안 제3조)
-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안 제7조 및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도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생활임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박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 안임.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근로자들은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져서 소득 불평등 상태에 처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에는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에 놓여있었음.
 - 주거, 교통, 문화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평등 상태를 해소해 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강남구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타 자치구 대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제한되어 강남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공단 소속 근로자 포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 안 제2조(정의)는 생활임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그 정의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개념을 규

정한 것임.

- 안 제3조(적용 범위)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구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생활임금의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남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문화재단, 복지재단)까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지방공단과 재단법인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무는 해당 법인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져 ‘지방공단과 재단법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나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문화재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부터 제6조(위원회의 운영)까지는 기존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을 정한 규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의 범위, 단계적 적용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및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는 생활임금 결정을 구청장이 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바 기존의 생활임금 조례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기존에 권장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¹⁾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생활임금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그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 안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는 원활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2025년 사업년도가 시작되는 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시점을 일률적으로 일시에 적용하는 것인지,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는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간주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와 생활임금의 실질적 적용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임.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법인은 우리구 조례로 설치한 공공기관으로 구청장의 관리감독 대상기관인 점과 구청장 방침으로 문화재단은 이미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적용범위의 확대는 출자·출연기관 간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임. 다만,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 체결시 적용기업을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종합적인 정책적 논의는 필요해 보임.

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67호

제안일자 : 2024.6.1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는 개정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정비함 (안 제8조제2항)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를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강남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u>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대상에게 적용한다.

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기획경제국장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의원 2명
3. 근로자 임금·근로조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사
4.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 1. 생활임금의 수준
-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로 본다.